

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
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檢 討 報 告 書

【이규선 의원 발의】



2020. 8. 3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57호로 2020년 8월 21일 이규선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·관리하게 할 경우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위탁·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9조제8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(2020. 8. 21. ~ 8. 25.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·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19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위탁·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.
- 현수막 지정게시대(47개소)와 지정벽보판(25개소)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